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9.25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.28일부터 10.11일까지 2주간을 “추석 특별방역기간”으로 지정하고,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.

3. 비수도권의 경우, 수도권으로부터의 귀성·여행 증가에 따라 가족·지인 간 유흥시설·주점 등의 이용과 관광지 밀집도 상승이 예상되는바,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(고위험시설은 제외)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○적용 기간 : 2020년 9. 28.(0시 부터) ~ 10. 11.(24시 까지)

○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(제1항 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1).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

○ 실내·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

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
- 각종 행사*는 취소하고,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
- * 민속놀이 체험, 인형극, 송편 만들기 등

○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

-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

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

-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·휴원 권고,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○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
-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/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,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2 이상)시행
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인원 제외 가능

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○ 시장,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·단속 강화

- 전통시장·백화점·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·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, 시식코너 최소화
-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·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
- 음주운전 단속 강화

2).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안내

○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- 집합·모임·행사 :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애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
- 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,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붙임 1. 비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

3).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

-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
- 조치 내용 : 집합 금지
 - 유흥시설의 경우, 첫 1주간(9.28~10.4)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, 다음 1주간은 조정 가능
 -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2주 내내 완화 조치 불가
- 대상 시설 :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붙임 2. 비수도권 고위험시설(6종) 집합금지 조치 1부

붙임 3. 비수도권 고위험시설(6종) 집합제한 조치 1부

4).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

-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
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(포장·배달 제외), 거리두기, 소독·환기 등
- PC방
 - 미성년자 출입금지,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,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
- 학원(교습소, 독서실 포함), 오락실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소독·환기, 거리두기 등

붙임 4. 비수도권 PC방 집합 제한 조치 1부

붙임 5.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 제한 조치 1부

붙임 6.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조치 1부

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,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14개 시도



주무관	강재희	행정사무관	이성경	생활방역팀장	김정숙	전략기획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	박능후	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5121** 접수 **학생건강정책과-8360 (2020. 9. 25.)**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jaehuekang@korea.kr / 비공개(5)